

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2022. 1. 1. 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에 의해 한국은행 목포본부(이하 “목포본부”라 한다)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한도(이하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대상 금융기관)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목포본부 관할지역(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장흥군)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2.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제3조(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전략지원한도, 특별지원한도 및 일반지원한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지원대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1. 창업기업
2. 벤처기업
3. 혁신기업
4. 녹색기업
5. 연구개발우수기업
6. 추천기업
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9. 전입기업
10. 수출관련기업
11. 소재·부품 생산기업

12. 의료·교육 관련기업
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14. 명절·재해 자금
15. 기타 지원기업
16.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② 지원대상업체의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전략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목포본부의 전략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는 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전략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전략지원부문은 업체당 2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

④ 전략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은 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 지역별 경제사정,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을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 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 및 업종제한은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은 대출실적은 금융기관 대환 등을 통해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할 수 없다.

제6조(특별지원부문) ① 제4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중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 자금대출에 한정한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

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여신종별 신용

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B2512-2)에 따른 신용 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병원 및 의원(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71101업종, 71102업종, 71201업종, 71202업종, 861~862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일반지원부문) ①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제외한 지원대상업체를 일반 지원부문으로 지정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전략지원부문 및 제6조에 따른 특별지원부문에 대해 배정하고 남은 한도를 일반지원부문에 배정한다.

③ 일반지원부문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비례배정한다.

④ 일반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배정한다.(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

⑤ 일반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4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

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8조(지원일몰제도) 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지원기간 만료 후에도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금 대출의 최초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 다만 지원기간동안의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의 누적지원금액(지원기간동안의 월별 지원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실적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따라 신규 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을 재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을 계산한다. 다만, 신규 지원 중단기간동안 자금을 수혜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을 신규지원

재개시점 이후의 지원실적에 포함한다.

④ 본부장은 자연재해 및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명절자금 수혜업체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신규지원 중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명절·재해자금 및 기타 지원기업) 본부장은 제4조 제1항 제14호(명절·재해자금) 및 제15호(기타 지원기업) 지원시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 대출실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2.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3. 다른 규정 등에 의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이차보전 대출 제외)
5. 폐업업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대출금
6. 마이너스통장식 대출, 한도거래대출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금
7. 부동산업, 유흥업 등 <별표2>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금

제11조(자료제출) ① 금융기관이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목포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요약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취급실적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4. 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5. 창업기업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6.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본부장이 요구하는 배정 관련 자료

②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지원한 대출의 만기도래, 중도상환, 원 차주의 폐업업체 또는 최종부도거래처 지정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의 회수 및 배정) 본부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중 각 금융기관에 배정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함과 동시에 제11조의 보고서 및 자료에 의해 산정한 당월중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결제모집 앞으로 일괄 배정한다.

제13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1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수 이내에서 위규사유별로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도 감축

② 제1항의 제재 등으로 회수된 한도는 제재를 받지 않은 여타 금융기관에 직전 3개월간 평균 최종배정액의 금융기관별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

제14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9. 10.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배정된 특별한도는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7.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배정된 특별한도는 이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11.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및 제6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2000.12월 지점별 총액한도 배정은 종전 기준에 따라 일반운전자금대출중 어음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한다.

부 칙 <2001. 4. 18.>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1.>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6.>

(시행일) 이 기준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22.>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6.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7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현재 이미 배정된 우선지원한도는 이 기준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8. 26.>

(시행일) 이 기준은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21.>

(시행일) 이 기준은 2003년 2월 21일(2003년 4월 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8.>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2월 2일 (2004년 3월 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4년 9월 1일(2004년 10월 배정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2005년 8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월 2일(2006년 11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년 1월 이전에 배정된 우선지원한도에 대해서는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상환후 재취급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07. 7. 2.>

(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7월 2일(2007년 5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0.>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5월 3일(2008년 3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4월 1일(2009년 2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 4월 이전에 배정된 우선지원한도에 대해서는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09. 8. 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1월 2일(2009년 9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 11월 전에 배정된 우선지원한도에 대해서는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10. 8.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1월 1일(2010년 9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배정된 우선지원한도에 대해서는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른다.

② 제4조 제8항에 따라 2년간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출실적은 2007년 1월(2006년 11월 대출취급실적)이후의 지원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 칙 <2011. 5. 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8월 1일(2011년 6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배정된 우선지원한도에 대해서는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1. 10.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2011년 11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배정된 우선지원한도에 대해서는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2. 4. 8.>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목포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2. 9.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2012년 11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배정된 우선지원한도에 대해서는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8. 19.>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르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5. 4.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르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5. 6.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5년 9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 기준에 따라 취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5. 10.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1일(2015년 9월 대출취급실적)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배정 개시일은 2016년 3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따르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6. 6. 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배정 개시일은 2016년 9월 첫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따르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6. 6.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 기준으로 2016년 5월 1일부터, 한국은행 배정 기준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따르되 이를 연장할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2017. 6.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배정 개시일은 2017년 9월 첫 영업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따른다.

부 칙 <2017.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목포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7. 12.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12. 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6.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6. 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¹⁾
A1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영업개시후 3년 이내인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표 10~34번 해당) <li style="padding-left: 20px;"><제외대상> <li style="padding-left: 20px;">o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li style="padding-left: 20px;">o 법인전환, 조직변경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li style="padding-left: 20px;">o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A2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업체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참여업체 o 관·학계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업체
A3	혁신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15호)에 의거 국내에서 개발된 신제품(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획득 기업 - 신기술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10호)에 의거 국내에서 개발된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인증 획득 기업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 인증 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 및 「기술력 우수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협약」에 따라 기술평가인증서를 획득한 중소기업
A4	녹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환경표식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환경부에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기술표준원의 GR(우수 재활용 제품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에너지관리공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인증한 기자재, 설비 생산업체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Green-Biz 선정 업체
A5	연구개발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A6	추천기업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추천한 업체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D)}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501번 해당) ○ 농림수산업 지원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10번 해당)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0312번, 20313번 해당) · 농수축산용 기기 제작 및 수리업체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중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46~47번 해당)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건조 및 수리업 관련 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단, 관광유희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희업, 외국인전용 유희 음식점업 제외) ○ 태양광, 풍력, 조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 세라믹신소재 및 도자기관련 산업 ○ 청정 해조류 및 천일염관련 산업 ○ 해양플랜트관련 산업 ○ 해양레저장비관련 산업
A9	전입기업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제조업 영위기업에 한함)
A10	수출관련기업	- 전라남도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환위험관리 우수 인증업체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 지식경제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부품소재전문기업체
A12	의료·교육 관련기업	- 해당사항 없음
A13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 하는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01-03을 영위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6~47번 제외)

전산 코드	지원부문	선 정 기 준 ¹⁾
A14	명절 및 재해 자금	- 한국은행목포본부장이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업체 o 명절 및 연말 등 자금수요기에 운전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 o 수해, 화재 및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 o 연쇄부도 등 특별경제현안 극복을 위해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체
A15	기타 지원기업	- 기타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한 업체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 하는 업체 ³⁾ o 음식·숙박업(55~56) o 도소매업(45~47) o 여행업(752) o 운수업(49, 51~52) o 여가업(90~91) o 해운업(501~502)

- 주 : 1)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취급일자가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2)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해당 기업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업종, 사업계획서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

<별표2>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업종

업 종 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제10차)
부동산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주 점 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전문점 56219 기타주점업
무 도 장	91291 무도장운영업
도 박 장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 용 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안 마 업	96122 마사지업
금융관련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별표3>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 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¹⁾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 ²⁾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주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기업체의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로부터 지연(또는 소급)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신청정보				업체현황										대출내역									
일련 번호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¹⁾	신청 사유 ²⁾	지원 부문 ³⁾	지원 부문 여부 ⁴⁾	신용 등급 ⁵⁾	업종 ⁶⁾	업체 소재지 ⁷⁾	업체명	사업자 구분 ⁸⁾	법인 등록번호 ⁹⁾	사업자 등록번호 ¹⁰⁾	대표자 성명	자금 구분 ¹¹⁾	취급 점포명	취급점 소재지 ⁷⁾	대출일 ¹²⁾	만기일 ¹³⁾	대출 기간	대출 금액	금리 ¹⁴⁾	채권 보전 ¹⁵⁾	

- 주 : 1) 개별 대출건에 대한 고유 계좌번호, 업체당 "신규취급실적" 건별로 기재(업체당 신규취급실적이 한건 이상인 경우 건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신규" / "대환" / "만기연장"으로 구분하여 기재("대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기재한 경우 취급실적 변동보고서에 기존 취급분의 변동사유를 "만기상환"으로 하여 반드시 보고)
 3) 지원부문별 코드는 "한국은행△△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4) 일반지원부문 해당시 "0", 전략지원부문 해당시 "1",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2",
 특별지원부문 해당시 "3", 특별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이 일반지원부문 지원대상 대출실적으로 간주된 경우 "4"로 기재
 5)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기재, 금융기관이 SOHO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에 별도의 신용등급을 부여할 경우 SOHO 대출은 "SOHO"라고 표시
 6)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최종개정분) 5자리 숫자 기재
 7) 광역시 지역은 시 단위, 일반 시 및 군 지역은 도/시·군 단위로 기재 : 예) 대전, 경남양산
 8) "개인" / "법인" 으로 구분하여 기재
 9) "-" 생략, 법인사업자만 법인등록번호란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란으로 남겨둠)
 10) "-" 생략
 11) "시설" / "운전" 으로 구분하여 기재
 12) 신청사유가 "대환"인 경우 대환일, "만기연장"인 경우 실제 기한연장일을 기입
 13) 신청사유가 "대환" 및 "만기연장"인 경우 대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 새로이 산정된 상환기일
 14) 대출취급시 적용금리를 기재
 15) "순수신용"(개인 및 법인에 의한 보증대출 포함) / "담보" / "보증"(신용보증기관 및 정부 보증) / "혼합"으로 구분하여 기재

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

(년 월중)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귀하

은행(회) 부(점)장 (인)

(백만원, 연%)

변동전보고내역							변동보고내역						
기관 코드	각행 관리번호 ¹⁾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자금 구분	취급 점포명	변동전 잔액	변동 일련번호 ²⁾	변동 사유 ³⁾	변동사유 발생일 ⁴⁾	변동 처리일 ⁵⁾	변동 금액	변동후 잔액	비고

- 주: 1) 변동이력 관리를 위해 기존취급건의 각행 관리번호를 기입
2) 개별 대출건에 대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변동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
3) "만기상환"("대환" 또는 "만기연장" 건도 기존 취급분은 "만기상환"으로 처리) / "중도전액상환" / "중도일부상환" / "지원종료" / "휴폐업" / "최종부도"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기타의 경우 비고란에 상세사유 기재
4) 만기일자, 상환일자, 휴폐업일, 최종부도일 등(다만 지원기간 종료로 한국은행의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로 기재)
5) 보고 대상월의 처리일자를 기입(예: 3월 취급실적 변동보고서는 3월의 처리일자만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 확인서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귀하

아래 대출은 기술평가인증서를 대출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취급한 대출임을 확인합니다.

- 업체명 :
- 대 표 :
- 사업자번호 :
- 계좌번호 :
- 대출일 :
- 대출금액 :

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